

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김용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82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12.

발 의 자 : 김용만 · 이수진 · 홍기원
이주희 · 이주영 · 박지원
김남근 · 권철승 · 김태선
문진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·병원·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의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아동·노인·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복지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 관리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복지시설,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에 대해서도 안전을 위해 실외사격장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8호의 2부터 제8호의4까지 신설).

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에 제8호의2부터 제8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의2.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8의3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8의4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격장 설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8호의2부터 제8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외사격장의 설치 허가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사격장 설치의 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한다. 다만, 위해 (危害)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 한 설비 또는 지형지물(地形地 物) 등이 있는 장소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.	제8조(사격장 설치의 제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8의2.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<u>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시설</u>
<u><신 설></u>	8의3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<u>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시설</u>
<u><신 설></u>	8의4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<u>장애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</u>
9. (생 략)	9. (현행과 같음)